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05
----------	------------

제안연월일 : 2016년 6월 2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학교 내 학생안전, 위생, 주변민원 등 교육청의견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관사무 원칙을 감안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함.(안 제2조 및 제3조)
- 안 제4조를 삭제함.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  
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6호부터 제7  
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6호로 한다.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0  
조로 한다.

##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영업장소) ① (생략)                      1.-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u>교</u>                      6.-7. (생략)                      ② (생략)</p> <p>제3조(첨부서류) (생략)                      1.-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u>  <u>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u>  <u>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u>  <u>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u>  <u>관한 서류</u>                      6. (생략)</p> <p>제4조(자치구의 영업장소 등 지정) 구청장                      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도 각                      자치구별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                      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별표15                      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생략)                      ② (생략)</p> <p>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생략)                      ② (생략)</p> <p>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생략)</p>	<p>제2조(영업장소) ① &lt;원안과 동일&gt;                      1.-4. &lt;원안과 동일&gt;                      5. &lt;삭제&gt;                      5.-6. &lt;원안과 동일&gt;                      ② &lt;원안과 동일&gt;</p> <p>제3조(첨부서류) &lt;원안과 동일&gt;                      1.-4. &lt;원안과 동일&gt;                      5. &lt;삭제&gt;                      5. (생략)</p> <p>&lt;삭제&gt;</p> <p>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lt;원안과 동                      일&gt;                      ② &lt;원안과 동일&gt;</p> <p>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                      간 등) ① &lt;원안과 동일&gt;                      ② &lt;원안과 동일&gt;</p> <p>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lt;원안과 동일&gt;</p>

원 안	수 정 안
<p>제8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lt;원안과 동일&gt;</p> <p>② &lt;원안과 동일&gt;</p>
<p>제9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lt;원안과 동일&gt;</p> <p>② &lt;원안과 동일&gt;</p>
<p>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생략)</p>	<p>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lt;원안과 동일&gt;</p>
<p>제11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lt;원안과 동일&gt;</p> <p>② &lt;원안과 동일&gt;</p> <p>③ &lt;원안과 동일&gt;</p>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

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 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